

직원병가사용에 관한 시행세칙

제 정 2005. 05. 12

개 정 2005. 12. 02

개 정 2018. 04. 10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취업규정 제28조제1항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병가사용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“병가”라 함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.

제4조(병가 부여방법) ①병가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본인이 신청하고, 부득이한 경우 가족 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8. 4. 10.>

② 삭제 <2005.12.2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

